

텐핑 어뷰징 규제 정책

1. 어뷰징의 의미

어뷰징이란 텐핑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텐핑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텐핑과 소문주, 그리고 텐핑의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금지되는 구체적 어뷰징 사례

(1) 소문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광고의 효과와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소문주의 콘텐츠를 클릭하게 하고, 동영상을 재생시키도록 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하게 하고, 연락처를 접수하게(이하 '소문내기'라고 합니다.) 함으로써, 소문주의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행위로서 아래의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 ① 소문주의 콘텐츠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문내기'.
- ② 소문주의 콘텐츠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SNS 등)에 '소문내기'
- ③ 소문주의 콘텐츠 제목을 잘못 알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조회하도록 유도하는 '소문내기'
- ④ 맹목적으로 클릭 수 등을 올릴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진행하는 상호 간의 '소문내기'
- ⑤ 맹목적으로 클릭 수 등을 올릴 목적으로, 콘텐츠 수용자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의 팝업창을 이용해 클릭을 유도하는 '소문내기'
- ⑥ 맹목적으로 클릭 수 등을 올릴 목적으로, 동일 IP 또는 동일 디바이스에서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소문내기'
- ⑦ 소문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혀 구매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연락처를 접수하도록 하는 '소문내기'
- ⑧ 소문주가 연락처와 함께 요구한 항목들을 거짓으로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소문내기'
- ⑨ 동일한 연락처를 반복적으로 접수시키는 '소문내기'

- ⑩ 소문주의 유료 제품 또는 서비스를 무료체험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시켜서 연락처를 접수시키는 '소문내기'
- ⑪ 소문주의 앱을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소문내기'
- ⑫ 앱 설치자의 재실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7%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소문주의 앱에 대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문내기'
- ⑬ 현금이나 상품, 또는 비금전적 무형의 혜택을 대가로 지급하는 '소문내기'
- ⑭ 소문주의 콘텐츠에 맹목적 관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문구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소문내기'
- ⑮ 소문주의 콘텐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 콘텐츠로 검색 또는 SNS 노출량을 극대화한 뒤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의 '소문내기'
- ⑯ 소문주의 콘텐츠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동영상으로 SNS 노출량을 극대화하면서, 합당한 소문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설치·참여를 유발하는 '소문내기'

(2) 소문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 ① 음란, 도박, 폭력물 등이 있는 유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내기'
- ②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분별한 홍보를 시도함으로써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 또는 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소문내기'
- ③ 뉴스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내용상 전혀 상관없는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댓글을 달아 타 사용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소문내기'
- ④ 소문주의 경쟁 브랜드 커뮤니티에 '소문내기'를 하여 소문주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소문내기'
- ⑤ 소문주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모두(modoo.at) 등 소문주의 각종 사이트 및 SNS 채널을 위조해 소문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소문내기'
- ⑥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소문주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문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소문내기'
- ⑦ 소문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문구 및 이미지를 이용한 '소문내기'
- ⑧ 저작권 또는 초상권을 위반하는 자료를 이용한 '소문내기'

- 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각종 사이트 및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홍보하는 일체의 '소문내기'

(3) 텐핑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①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텐핑의 다른 사용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텐핑의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
- ② 다른 사용자가 정성 들여 작성한 소문내기 문구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소문내기에 사용함으로써 텐핑의 다른 사용자를 불쾌하게 하는 행위

(4) 텐핑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① 텐핑이 '소문내기'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의 요청에 대해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② 텐핑이 서비스의 운영 또는 광고 효과 유지를 위해 연락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시 뚜렷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행위
- ③ 소문주가 금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게시를 금지한 사이트에 콘텐츠를 올리는 등 '소문내기' 시 소문주의 요청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행위
- ④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모두(modoo.at) 등에 타 사용자들이 텐핑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SNS 채널로 오인할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는 행위
- ⑤ 텐핑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텐핑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소문내기 시스템 등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
- ⑥ 텐핑에 의해서 블랙리스트 유저로 분류되어 활동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수단을 통하여 텐핑의 사용자로 활동하는 행위
- ⑦ 참여형 소문내기의 경우,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을 대신하여 소문주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⑧ 텐핑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소란이나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
- ⑨ 텐핑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어뷰징에 대한 징계

텐핑의 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전 2항에서 정하는 어뷰징 사례가 발견될 경우 텐핑은 해당 사용자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누적 포인트 전액 소멸

(2) 텐핑 서비스 이용정지

1회 발견 시 2주간 이용정지/ 2회 발견 시 2개월간 이용정지

(3) 텐핑 서비스 영구적 이용정지

① 어뷰징 사례가 3회 이상 발견될 경우

② 3회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어뷰징 수법이 매우 악의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문주의 경제적 이익, 브랜드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 형사상의 조치

어뷰징으로 인해 텐핑이나 소문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어뷰징 자체가 관련법 또는 텐핑 홍보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텐핑은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